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변경)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기존 공고 제2026-1641호(2026.9.14.)

2026년 9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나. 참여자격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보령, 금산, 계룡 소재 기업 제외(사업 예산 미확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제외 대상 불임3 참고

다. 지원분야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2

지원 방법

가.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구분	최대 지원기간	연간 지원한도금액	최대 지원한도금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3천만원	6천만원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3천만원	6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5천만원	1억 5천만원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시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나. 자부담 적용

- 사업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또는 20% 자부담 유지
 - 인증사회적기업 20%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10%
 ※ 예시)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보조금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이상

전체 사업비(1억)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부담)
사업비 중 보조금(80백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20백만원)	

다.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라. 사용불가 항목 : 붙임3 참고

-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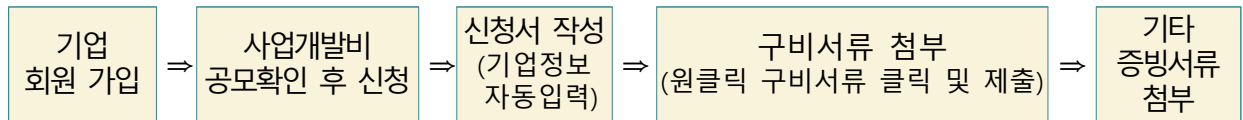
3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9. 14.(월) ~ 9. 30.(수) 18:00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 '신청서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나.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시스템 등록 절차



※ 시스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4 사업 설명회 개최

가. 때 · 곳 : 2026. 9. 16.(수) 15:00,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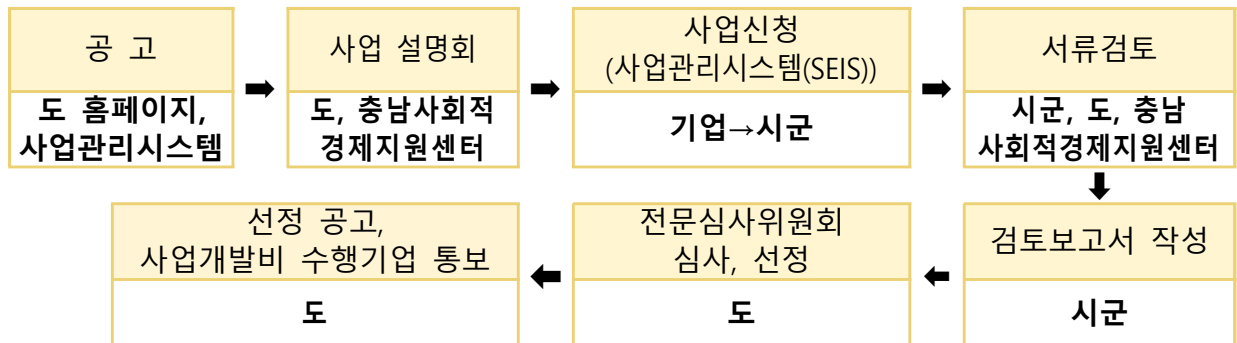
나. 참석대상 : 시·군 담당자, 재정지원 수요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 주요내용 : 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평가기준 등

라. 주관주최 : 충청남도(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선정 절차 및 결과 통보

가. 선정절차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 (확인경로) 충남 홈페이지(www.chungnam.go.kr) → 알림마당 → 공고·고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필요 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별도 시스템 제출
-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대면심사 발표(PT) 자료는 하기 4번 항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업로드 시, 계획서 자료와 함께 압축파일로 업로드

- ① 사업신청서 [붙임4] ※ 시스템에 작성 또는 업로드(이하 동일)
-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e-러닝('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등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구비서류 첨부 메뉴상 법인등기부등본 항목에 같이 첨부
- ⑩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 측정지표 서식 3, 6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소식자료 > 발간자료 > 매뉴얼 > 「2026 사회적가치치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 ⑪ 발표용 PT 자료(10분 이내 분량, 자유형식, 심사기준·항목 반영)

7

기타 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처벌 가능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8

문의처

-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SEIS) 관련 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가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관련 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56-8124, 8132

- 도 담당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육성과	041-635-3486

- 시군 담당부서

시군	부 서	전화번호	시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 521-5612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 830-2264
공주시	경제과	(041) 840-8314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 950-4120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 530-6049	청양군	경제과	(041) 940-4072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 660-2590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 630-1355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 746-6027	예산군	경제과	(041) 339-7283
당진시	기업육성과	(041) 350-4572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 670-2708

붙임1 2026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세부일정(안)

추진 내용	일 정	수행주체
충남도 지원계획 공고 (홈페이지,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	9. 14.(월) ~ 9. 30.(수)	도
사업 신청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	9. 14.(월) ~ 9. 30.(수)	기업 → 시군
사업 설명회	9. 16.(수)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류 검토 및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10. 1.(목) ~ 10. 8.(목)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심사위원회 심사(발표평가) ※ 질의응답 포함 15분 이내 진행	10. 13.(화) ~ 10. 14.(수)	도, 시군, 심사위원회
선정 결과 공고	10. 15.(목)	도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비고
정량평가 (25점)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로 대행	20 16 12 8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5점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정성평가 (75점)	사업계획 적성성 및 기업의 경쟁력	10점	· 사업지원의 필요성(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성평가
		3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2호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10점	· 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 - 기업의 사업 수행 경험, 수상경력, 내부인력 전문성, 인증 내역 등 -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 · 사업 계획의 차별성 - 신청기업 사업의 경쟁력, 경쟁자 분석, 시장분석 등이 충분한지	
	사회적 목적 실현	15점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외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 SVI 3번 지표	
		10점	·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3점)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5점) - 기타(비금적적 조직의 역량 활용(2점)) ※ SVI 6번 지표	
가점 (10)		10점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등급 : 양호 3, 우수 4, 탁월 5점 (2023~2025년 측정 결과 중 최대치) ·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자율경영공시 인증기업 사업장(전년도)	5 3 2

* 실적확인 :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붙임3 **사업 신청자격 제외 대상 및 사용불가항목**

□ 사업 신청자격 제외 대상

- ❶**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❷**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확인
- ❸**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 사업간 지원 목적,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❹**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 고용부 재정지원사업인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선정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금액과 본 사업의 지원한도 차액만큼 신청·선정 가능
 - (예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로 2천만원 지원이 확정된 인증사회적기업은 한도액인 5천만원과 2천만원의 차액인 3천만원까지 신청·선정 가능
- ❺**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격으로 최대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예시)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된 경우에도 최대지원기간 만료로 신청 불가
- ❻**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사용불가 항목

❶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❷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❸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❹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❺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❻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❼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❽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❾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능한 분야는 지원가능

❿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⓫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그 외 관련사항은 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 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협동조합		☐ 1년차 ☐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신청 기업	기관명				대표자(주민번호)		(-)			
	소재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혼합형 ☐ 기타형									
*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 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별지)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 비용요	사업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도비·시군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원		☐ 홍보 ☐ 광고		원			
	☐ 기술개발		원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원			
	☐ 특허출원		원		☐ 예술공연기획		원			
	☐ 교육훈련비		원		☐ 홈페이지제작		원			
		원		☐ 쇼핑물제작		원				
		원		☐ 기타()		원				
중견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 .	. . . ~ . . .					
			전문인력 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 .	. . . ~ . . .					
	전문인력 지원		. . .	. . . ~ . . .						
	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사업명 기재 (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 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 귀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 수 증가, 지역 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금 액	비 율
합 계		100%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80~90%)	자부담 (c=10~2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 계약금 월 일 • 중도금 월 일 •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20%)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측정 보고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2 참조
주업종	작성요령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6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5년)을 의미
-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19.1.1.)

3. 측정 기업이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력업종 (제출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을 기준으로 측정](사회적가치 지표 활용메뉴얼 86P)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인가)번호 및 인증(지정,사업)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증빙서류

- 20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5년 12월 임금대장
 - *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한정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인사규정, 취업규칙 / 기업 내부문화 형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서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 작성 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판단기준	착안사항
내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5점)	※ 필수 확인사항(유형별 ① / ②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①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은 ①번 항목만 작성 ②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①번 해당기업 외에 모든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②번 항목만 작성 - (취약계층 고용의무) 현재(2026년)과 측정연도(2025년) 사회적목적 유형이 다를 경우, 측정연도(2025) 기준으로 판단 (ex. '25년까지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이었으나 '26년 기타(창의·혁신)형 인증사회적기업이 되었을 경우,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 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2점):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은 제시된 [부록의 '참고자료 2'와 비교하여 기업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을 기재 - (고용) '25.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인원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임금) '25.12월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2점):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 노력 등 기재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 등 기재 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1점):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 - 기업차원에서 직원 대상 건강검진 유상 진료 지원 및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교육 등 실시 내역 ※ 참고사항 · 국가건강검진 수검은 해당하지 않음 ·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해당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의무교육 포함) 실적으로 불인정, 단 지표 9의 실적으로 인정함 · 유상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이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판단기준	착안사항																			
	(예시)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흡서기/흡한기 옥외작업 최소화, 신재예방 지원사업 참여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지침(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여부) • 근로자 건강검진(기업 추가 검진) • 사고 및 재해 등 리스크 관리 계획 및 관련 서류 • 정기적 안전점검 여부 • 안전용품 비치, 근로자 보험 여부 •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여부 • 근로자 안전 또는 위험성 평가 전담인력 배치 •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여부 이외 관련된 근무 기록 • 안전 설비 확인 자료, 안전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록 여부 • 안전 관련 용역 인력 구성 및 활용, 중대재해 관련 컨설팅 수행 여부 • 직원의 정서 및 심리 지원 등																			
	④ 고용의 질(2점): 근로자 친화적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조성 노력 기재 -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일·가정양립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유연근무제 등 시행 내역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 가치 (10점)	① 기업 외부 운영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과정, 이용자의 사용, 기타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기재 - (제품·서비스의 사회적가치)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 (기타 사회적가치) 상기 항목 외에 외부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② 외부 운영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사례의 구분, 목적, 대상, 활동을 설정하고 다음 페이지 사례를 참고하여 내용 기재 * 사회적가치 1) 구분, 2) 목적, 3) 대상, 4) 활동 네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야 한 개의 사례로 인정 * 사례 간 네 가지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사례와 분야, 대상, 활동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예: 분야와 대상은 같으나 활동이 다를 때) 한 개의 사례로 추가 인정 ③ 기타 사례의 경우에도 타 측면의 사례와 명확하게 구분될 때 한 개의 사례로 인정 (예: 푸드, 라이프스타일, 지속가능 패션, 폐기물 저감, 탄소배출량 감축 등)																			
	 기업 작성예시 <table><tr><th>구분</th><th>목적</th><th>대상</th><th>활동</th></tr><tr><td>제품 서비스 생산 및 판매</td><td>지역경제 발전을 위해</td><td>지역농가와 협력하여</td><td>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td></tr><tr><td>제품 서비스 생산 및 판매</td><td>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td><td>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td><td>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td></tr><tr><td>이용자</td><td>지역 환경개선을 위해</td><td>청년을 대상으로</td><td>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td></tr><tr><td>기타*</td><td></td><td></td><td></td></tr></table> *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 기업 외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관련된 활동 등을 기재	구분	목적	대상	활동	제품 서비스 생산 및 판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	제품 서비스 생산 및 판매	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이용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기타*		
구분	목적	대상	활동																	
제품 서비스 생산 및 판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																	
제품 서비스 생산 및 판매	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이용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기타*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 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 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증빙서류

- 조직 내부활용: 2025년 복리후생비 관련 기안서 및 지출증빙, 근로자 성과급 지급 관련 기안서 및 이체확인서, 시설비 투자내역 등
 - * 계정별 원장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조직 외부활용: 2025년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 산출한 성과금액은 본 지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3점)	① 복리후생비(1점) :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복지 및 후생을 위해 지출한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복리후생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② 근로자 성과급(1점)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금전 내역 지급 유무 기재 내역만 인정 - 증빙자료: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 상여금 불인정 ③ 시설투자비(1점) :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 참고사항 -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등 근로자의 직접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단순 소모성 제품 구입이나 사업 운영을 위한 재화/서비스 구매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구매와 임대 모두 시설투자로 인정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도입은 지표14에 포함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 이에 따라 복사기, 프린터, PC, 노트북, 모니터 등 사무기기 구매/임대 내역도 본 지표 실적에는 해당하지 않음.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5점)	○ (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 내용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 내용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
기타(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2점)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인력·시간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한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